

산불 피해 기업, 재해손실 세액공제 적용받으세요.

- 국세청(청장 강민수)은 최근 울산·경북·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법인의 경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
- (적용 대상) 천재지변이나 재해로 인하여 사업용 자산의 20%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재해상실비율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공제합니다(법인세법 §58①).

$$\text{재해상실비율} = \frac{\text{상실된 사업용 자산가액}}{\text{상실 전의 사업용 총자산가액(토지는 제외)}}$$

- 이 경우 사업용 자산은 재해발생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며, 장부가 소실 또는 분실되어 장부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확인한 가액에 의하여 계산합니다.
- 다만, 자산가액에는 토지가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며, 타인 소유의 자산으로서 그 상실로 인한 변상책임이 있는 것은 포함됩니다.
- 또한, 재해자산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을 수령하는 때에도 상실된 자산의 가액은 보험금을 차감하여 계산하지 않습니다.
- (공제 세액) 공제 세액은 ①재해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세와 부과된 법인세로서 미납된 법인세 및 ②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재해상실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, 재해로 인해 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공제합니다.

| 구 분 | 재해손실세액공제 금액 = Min(①, ②) |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① 세액공제액 = ㉠ + ㉡ | ㉠ |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세와 부과된 법인세로서 미납된 법인세(가산세* 포함) × 재해상실비율 |
| | ㉡ |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+ 가산세* - 법인세법 외의 법률에 의한 공제·감면세액 × 재해상실비율 |
| ② 공제한도액 | 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자산가액 | |

* 장부의 기록·보관 불성실, 무신고, 과소신고·초과환급신고, (원천징수 등) 납부지연 가산세만 해당

□ (공제 신청)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법인은 재해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우편 또는 홈택스*로 제출하면 됩니다.

* 홈택스 → 증명·등록·신청 → 세금관련 신청·신고 공통분야 → 일반 신청·결과 조회 → 일반 세무서류 신청 → 민원명 찾기에서 '재해손실'로 검색

○ 다만, 재해발생일 현재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은 법인세는 그 신고기한까지 제출하면 되고, 재해발생일부터 신고기한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재해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됩니다.

<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 제출기한>

| 구 분 | 제출 기한 |
|---|---|
| ▶재해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세와 부과된 법인세로서 미납된 법인세 | ▶재해발생일부터 3개월 |
| ▶재해발생일 현재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은 법인세 | ▶그 신고기한 (다만, 재해발생일부터 신고기한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재해발생일부터 3개월) |

□ 앞으로도 국세청은 재해, 사업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.

| | | | | |
|-------|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담당 부서 |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| 책임자 | 과 장 | 황동수 (044-204-3301) |
| | | 담당자 | 사무관 | 이희범 (044-204-3312) |

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



참고 1

재해손실세액공제 계산 사례

- 농업회사법인 ☆☆은 축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제25기(2025.1.1.~2025.12.31.) 사업연도 중에 산불로 인하여 공장이 불에 타는 등 피해가 발생하였다. 화재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.

<화재관련 자료>

1. 화재발생일 : 2025.3.22.(특별재난지역 선포일)
2. 농업회사법인 ☆☆의 사업용 자산가액 변동명세는 다음과 같다.

| 구 분 | 화재발생 직전 장부가액(①) | 화재로 인해 상실된 가액(②) | 화재발생 후 장부가액(③=①-②) |
|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건 물 | 20억원 | 10억원 | 10억원 |
| 토 지 | 30억원 | - | 30억원 |
| 기계장치 | 10억원 | 6억원 | 4억원 |
| 기타자산 | 5억원 | 5억원 | - |
| 합 계 | 65억원 | 21억원 | 44억원 |

3. 화재발생일 현재 농업회사법인 ☆☆의 제24기 사업연도는 종료되었으나 아직 신고·납부하지 못한 법인세는 2억원이다.
4. 농업회사법인 ☆☆은 제23기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고 3억원(가산세 5백만원 포함)을 고지받았으나 재해발생일 현재 납부하지 못한 상태이다.
5. 농업회사법인 ☆☆의 제25기 법인세 산출세액은 1억원이며, 이는 화재로 인한 재해손실이 손금으로 반영된 결과이다.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제외하고 제25기에 농업회사법인 ☆☆☆에 적용될 공제감면세액은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5천만원뿐이며 가산세는 증명서류수취 불성실가산세 1천만원뿐이다.(2026년 법인세 신고 시 신청)

○ 자산상실비율 : $60\% \geq 20\%$

$$(\text{상실된 자산가액}) \div (\text{상실 전 자산총액}) = 21\text{억원} \div 35\text{억원}^* = 60\%$$

* 자산총액에서 토지는 제외됩니다.

○ 재해손실세액공제 : **3.3억원** (=Min(①+②+③, 21억원))

$$\text{① 제23기 체납된 법인세} : 3\text{억원} \times 60\% = \mathbf{1.8\text{억원}}$$

$$\text{② 제24기 법인세} : 2\text{억원} \times 60\% = \mathbf{1.2\text{억원}}$$

$$\text{③ 제25기 법인세(2026년 3월 법인세 신고 시 신청)}$$

$$: (\text{산출세액} + \text{가산세}^* - \text{공제} \cdot \text{감면세액}) \times \text{재해상실비율}$$

$$= (1\text{억원} + 0\text{원} - 0.5\text{억원}) \times 60\% = \mathbf{0.3\text{억원}}$$

* 가산세는 ①장부의 기록·보관불성실, ②무신고·과소신고·납부지연·원천징수등 납부지연 가산세에 한합니다.

참고 2**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 서식**

■ 법인세법 시행규칙 [별지 제65호서식] <개정 2014.3.14>

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

| 접수번호 | 접수일 | 처리기간 즉시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
| 신청인 | ① 본 점 소재 지 | |
| | ② 법 인 명 | |
| | ③ 사업자등록번호 | |
| | ④ 대 표 자 성 명 | |
| 신 청 내 용 | | |
| ⑤ 사 업 연 도 |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(월) | |
| ⑥ 감 면 세 액 | 법인세 | |
| ⑦ 자 산 상 실 의 원인발생연월일 | | |
| ⑧ 상실 전의 자산가액 | | |
| ⑨ 상실된 자산가액 | | |
| ⑩ 상 실 비 율 | $\% (100 \times \frac{⑨}{⑧})$ | |
| ⑪ 감면신청이유 | | |

「법인세법」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법인세의 감면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(신청)인

(서명 또는 인)

세무서장 귀하

210mm×297mm[백상지 80g/m² 또는 중질지 80g/m²]